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2월 16일 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2월 6일, 정재동 의원 및 김용술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6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2월 16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정재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대형화·다양화 되는 재난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, 화재·구조·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소방환경을 향상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(안 제1조)
- 조례의 적용범위(안 제2조)
- 의용소방대 지원범위(안 제3조)
- 의용소방대 지원절차(안 제5조)
-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(안 제6조)
- 의용소방대 지원 중단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1 제정 배경

- 금천소방서 의용소방대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바, 주민들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되는 비상근 소방대로서, 주로 소방업무를 보조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재난·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·구급활동을 수행하고 있음.
- 최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, 도시지역의 화재진압, 구조, 구급의 기본업무 외에도 산불진압, 자연재해 지원활동 등 소방지원업무가 증가하고 있어, 소방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한 실정임.
- 위와 같은 소방수요 증가로 인한 소방인력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용소방대의 체계적인 소방활동이 필요한 바, 구 차원에서 의용 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 및 현장 대응능력강화 등을 도모하여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재정립 하려는 취지로 보임.

② 주요 사항별 내용

- 본 조례안은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, 지원범위 등을 정함.
- 안 제4조에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안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는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마련함.
-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둠.
-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도· 감독과 지원중단 및 보조금 반환에 대한 규정을 정함.

○ 안 제8조는 화재진압 및 구조·구호 활동,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 소방대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함.

③ 종합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임.
- 현대사회의 소방 여건은 다양한 위험 요인의 증대로 전문 소방조직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, 소방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부족한 정규 소방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의용 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- 본 조례안은 소방력 향상을 위한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금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 기 위한 것으로, 제정취지와 상위법을 고려할 때 적법·타당하다고 판단됨
- 다만, 의용소방대는 법적 근거를 통해 설립된 조직이지만, 근본이 민간 조직인 특성상 친목단체로 전락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급 후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**답변요지**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<u>원안가결</u>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